

	기자재 및 비품관리위원회 운영규칙		규정번호	5-0-18
			제정일자	2013.7.1
			개정일자	2020.3.1
			개정번호	Ver.2
			총페이지	1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기자재및비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3.1>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행정부서의 처장 및 부처장이 위원이 된다. 간사는 관리영선팀장이 한다. <개정 2020.3.1>

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자재 및 비품관리규칙에 의거 심의를 요하는 사항
2.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회의소집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0.3.1>

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5조(준용)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자재 및 비품관리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